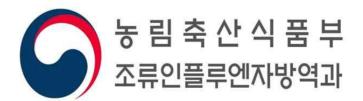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2023. 9.



# 목차

Ⅰ. 추진 배경1
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2
1. <b>철새 방역관리 강화</b> (철새 → 농장 전파 방지)···· 3
2. <b>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b> (농장 내 유입 방지)· 6
3. <b>농장간 확산 방지</b>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 14
4. <b>방역 지원체계 확립</b> 21
Ⅲ. 비상 방역체계 운영 ·························· 26 IV. 향후 계획 ···································
[ <b>붙임자료]</b> 1.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ol> <li>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li> <li>'23/'24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예찰지역(112개소)</li> </ol>
4. '23/'24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5.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안)

### Ⅰ. 추진 배경

- □ (상황) 지난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75건 발생하여 660만수 살처분, 야생조류는 174건 검출(모두 H5N1형)
  - (해외) 해외에서는 '21년부터 발생이 크게 증가<sup>\*</sup>하는 등 세계적 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 중인 상황
    - \* ('20) 1,566건 → ('21) 5,132(227%↑) → ('22) 7,307 → ('23.8.) 4,142(WOAH 기준)
    - 다만, 금년 1~8월까지 전 세계적인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5,608건 → 4,142)하였으나,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 국내 A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금년 1~8월까지 발생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 지난해에 비해 증가\*
    - \* 야생조류 : 2,933건 → 3,364(14.7% ↑)
    - \*\* 발생건수 : (유럽) 2,299건 → 2,651(153%↑), (아메리카) 494건 → 524(6%↑), (아시아) 115건 → 127(10.4%↑), (아프리카) 25건 → 62(148%↑)
- □ (진단) 이번 겨울철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

#### < 국내 유입 판단 근거 >

- ▶ 야생조류 발생(1~8월)이 전년 대비 14.7% 증가(2,933건→ 3,364)
- ▶ 유럽\*의 최근(6~8월) 야생조류 발생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234건/월)
  - \* 시베리아에서 유럽발(發) 철새와 국내에서 번식을 위해 이동한 철새간 교차감염 후 국내 유입
- ▶ 바이러스 유형도 전파력이 강한 H5N1형이 대다수(금년도 전 세계 발생의 92.4%)
- 특히, 최근(7~8월) 9월 말~10월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검출사례 고려 시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며,
  - \* 사할린 3건(바다오리류, '23.7.20.~25.), 연해주 1건(야생오리류, 항카호수, '23.8.14.)
-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발생도 빨라지고 있어 철새 도래 초기인 9월 말~10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이 중요
  - \* (우리나라) 가금: '21.11.8. → '22.10.17.(-22일), 야생조류: '21.10.26. → '22.10.10.(-16일) (일본) 가금: '21.11.10. → '22.10.28.(-13일), 야생조류: '21.11.11. → '22.9.25.(-47일)

### 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 ◈ 고병원성 AI 특성\*에 따라 <sup>①</sup> 철새 방역관리, <sup>②</sup> 농장 유입 차단, ③ 농장간 확산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
  - \* 감염된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축산차량·사람 등을 통해 농장으로 전파
- '23 7 27일 발표한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과 연계하여 그간 방역

		명원성 AI 당착 개선대책과 전계하여 그건 당착 부조치들은 유지하고 미흡사항은 보완·개선
분야	과제	주요 내용
철새 방역 관리 강화 (철새→농장 전파 방지)	야생조류 및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① 철새 도래 초기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로 AI 조기 인지 ② 고위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 ③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농가 진입로 등 집중 소독 ④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권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⑤ 철새 서식 실태 파악 및 해외 발생 정보 조사·분석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농장 유입	농장 유입 사전 차단 조치	① 의심축 신고기준 강화(농장별→축사별)로 조기 신고체계 구축 ②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특별 방역관리 ③ 산란계 밀집단지 맞춤형 방역관리 ④ 오리 예찰·검사체계 개선(종오리 농장 및 부화장의 종란 반출·반입 내역 비교 + 발생 시·군 육용오리 4회 검사) ⑤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 운영 강화 ⑥ 강화된 가금 입식 및 출하 관리 체계 운영 ⑦ 농장→축사 내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중성 유입 방지)	위험도 기반 정밀방역	①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 농가 집중 관리 ② 고병원성 AI 고위험 관리지역 지정 및 강화된 방역관리 ③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기준 강화(30만수→20만수) ④ 오리 사육제한 명령 제도 시행 ⑤ ICT·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기반 조성
농장간 확산 방지 (농장간	강화된 예찰· 검사 체계 운영 및 초동 대응 강화	① 가금농장 AI 정밀검사 강화 ② 민간기관을 활용한 AI 정밀검사 확대 ③ 고병원성 AI 확진 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④ 지역 단위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운영 ⑤ 발생시기 전화예찰 강화
수평전파 방지)	수평전파 차단조치	①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 ②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행 ③ 방역 취약요인 관리 및 점검

방역 지원 체계 확립

(지자체 및 민간 지원. 관리)

방역주체별 책임방역

지자체 및 민간 지원 강화

- ① 계열사 책임 방역체계 확립
- ② 가금 생산자단체와의 방역 협력체계 구축

④ 위험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역조치 개선

- ③ 가금농가 및 축산차량 운전자 등의 방역수준·역량 제고
- ① 방역기반 조성 및 농가 지원 강화
- ② 거점소독시설 관리 및 소독시설 주기적 점검
- ③ 방역 차량을 활용한 가금농가 소독 강화
- ④ 가금농가 전담관제 내실화

### 철새 방역관리 강화(철새 → 농장 전파 방지)

- ◆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위험지역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강화
  - \* 철새 도래 초기에 항원 검출 위험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선별하여 정밀 예찰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및 소독 등을 강화하여 농장 전파 예방에 총력

### ① 철새 도래 초기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로 AI 조기 인지

- (정밀 예찰)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항원 검출 위험성이 높은 철새도래지(19개소)를 선별하여 정밀 예찰
  - 10월 한 달간, 주요 야생조류종 초기 서식 지역(7개소) 및 항원 초기 검출지역(12개소) 등 철새도래지 19개소\* 검사 확대\*\*(10월, 환경부)
    - \* 미호강, 풍서천, 정읍천, 만경강, 낙동강, 주남지, 신천, 봉강천, 곡교천, 병천천, 복하천, 청미천, 안성천, 금정저수지, 고부천, 동진강, 원평천, 반월제, 해반천
  - \*\* ('22/23년) 678건 → <u>('23/24년) 746(10.0%↑)</u>



< 주요 야생조류종 초기 서식 >



< AI 항원 초기 검출 지역 >

- **(포획검사)** 야생조류 집단 감염 수준을 판단하는 항체 양성률 추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포획검사 강화<sup>\*</sup> 및 분석(검역본부)
  - \* ('22.9-23.4월) 1,920건 → ('23.9-24.4월) 2,140건(11.5%↑)

- (분변검사) 환경부와 협업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9~10월 중 항원
   조기 확인을 위해 집중적인 분변검사\* 실시
  - \* ('22.9-10월) 3,842건 → ('23.9-10월) 4,270건(11.1%↑)
  - ※ (폐사체 검사) 예찰 또는 신고를 통해 의뢰된 야생조류 폐사체를 검사(환경부)
- (정보 공유) H5/H7형 항원 검출 시부터 최종 결과 확인 시까지 농식품부-환경부 간 검사 정보 공유체계\* 운영
  - \* 농식품부-환경부 간 협의에 의해 마련한 '23/24년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표준 지침'에 따른 야생조류 분변·포획·폐사체 예찰·검사 추진

#### ② 고위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

- (출입 통제) 고위험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축산 종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 확대 및 운영\*
  - \* 9.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10.1일부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2/'23년 야생조류 H5·H7형 항원 신규 검출지점 및 야생조류 서식현황 등 반영(전년 대비 통제지점수 3개 증가\*)
    - \* 출입통제 지점 : ('22/'23년) 280개소 → ('23/'24년) 283개소(3개소 증)
- (통제구간 안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통제 안내판·홍보물 설치, 전산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대상 통제구간 음성 안내
- (해제구간 관리) '22/23년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으로 지정되었으나, 금년도 해제된 구간(7개소)의 인근 농가 진·출입로도 소독 등 관리

### ③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농가 진입로 등 집중 소독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가 진입로, 야생조류 항원 검출 지점 인근 도로 등을 집중 소독(지자체, 농협 임차지원·공동방제단 등)
  - 오염 우려 지역인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방제기, 방역차량 등 방제장비 지원 확대(농협 임차지원 포함)
  - 철새도래지 인근(반경 3km 내) 가금농가 및 차량·사람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소독 실시\*
    - \* 철새도래지·소독차량별 작업동선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소독지도 마련('23.10월)

### ④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권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 o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 외 검출지점이 속한 해당 권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항원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의 지역)
  - (예찰 강화) 해당 권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상황\* 점검 및 주기적인 전화예찰 실시(방역본부, 예찰지역 해제 시까지)
    - \* (산란가금·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육계) 출하 전
  - (현장 점검) 검역본부 중앙점검반\*은 해당 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소독·방역실태 점검, 미흡사항 확인 시 지자체 통보 \* 가축질병방역센터(9개소) 2개 반 18명, 제주센터 1개 반 2명 등으로 구성·운영
  - (농가 홍보) 지자체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방역준수사항 등을 지도·홍보, 검역본부는 문자(SMS) 홍보 추진

### 5 철새 서식 실태 파악 및 해외 발생 정보 조사·분석

- (국내 현황) 겨울철새 도래·서식 현황 파악 및 위험주의보 발령
  - 전국 겨울철새 서식실태 조사('23.9. ~ '24.4월, 월 1회, 환경부) 및 전국 64개 저수지 철새 도래 현황 조사(주 1회, 농어촌공사)
    - \* 서식 현황의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매월 동일 지점에서 조사 수행
  - 철새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조기 제공 및 방역 활동 활용을 위한 철새정보 알림시스템\* 운영 및 위험주의보\*\* 발령(검역본부)
    - \* 단계별(철새도래 → 밀집 → 주의 → 관심) 경보 발령 및 방역수칙 홍보(SMS 등)
  - \*\* 특정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다수 검출 또는 야생조류 서식 밀도 증가 등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위험주의보' 발령
- (해외정보) 해외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조사·분석(검역본부)
  -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상황(가금·야생조류) 및 특성 등을 모니터링 하고, 국내 유입 및 발생 위험성 등 분석(수시)

### 2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농장 내 유입 방지)

- ◈ 철새·사람·차량 등에 의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
  - ⇒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sup>①</sup> 의심축 조기 신고체계 구축, <sup>②</sup> 취약축종(산란계· 오리) 집중관리, <sup>③</sup> 가금 입식·출하 관리 강화, <sup>④</sup> 위험도 기반 정밀방역 추진

### □ 의심축 신고기준 강화(농장별→축사별)로 조기 신고체계 구축

- (신고기준 강화) 고병원성 AI 의심축 의무 신고기준을 농장 단위
   에서 축사 단위로 강화\*하여 가금농장의 조기 신고 유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개정 완료('23.8.31.)
  -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보다 2배 이상 증가 또는 축사별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 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

#### <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 개요 >

- ▶ (신고자)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 ▶ (신고시기)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 <sup>①</sup>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 증가, <sup>②</sup>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 대비 3% 이상 산란율 저하, <sup>③</sup> 닭(졸거나 청색증), 오리(녹변, 신경증상), 음수·사료 섭취율 감소 등
- ▶ (신고요령) 신고자는 농장주를 통해 해당 농장의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을 못 하도록 하고,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 (신고기관) 지자체,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 ▶ (신고체계) 시·군 → 시·도(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농식품부(검역 본부) → 관련 기관(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등)
- ▶ (조치사항) 가축 방역관은 신고 농장을 방문하여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고, 정밀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즉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송부
- (벌칙·혜택) 고병원성 AI 의심축 미신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 \* 미신고시 평가액의 60% 감액, 지연 신고 시 10~40% 감액
  - 다만, 고병원성 AI 조기 신고시에는 살처분보상금 혜택\*
    - \* 최초 신고 농가(시·군 단위)는 평가액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 신고 시 평가액의 10% 경감 가능

#### 2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특별 방역관리

- (현행) 그간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위주로 환적장 운영, 전담관 지정·운영, 전용 소독차량 배치, 출입차량 최소화 등 방역관리
- (강화방안)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특별 방역관리
  - **(10만수 이상)** 터널식 소독기 설치 의무화\*('23.10.19. 시행)에 따른 산란계 농장 출입차량 등 소독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3. 4. 18. 일부 개정)
  - **(20만수 이상)** 통제초소 설치기준 강화(30만수→20만수)
    - \* 20만수 이상 산란계 외에도 종계, 원종계, 원종오리, 밀집사육단지 등도 통제초소 설치
  - (30만수 이상)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여 농장별 (30만수 이상, 29호)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 추진
    - \* 오염원 유입 방지 등을 위해 출입동선 관리 및 각 시설별 차단방역 관리방안 마련
  - · 농장구조, 지형적 특성 등으로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참여\*가 어려운 농장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참여 유도
    - \* 법정항목 외 추가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 확대
  - · 3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6호) 및 가이드라인 개발(~11월)

### ③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맞춤형 방역 관리

- **(관리대상)**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90호 5,648천수 사육, '23.8월 기준)
  - \* 경북(4개소), 경기(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1), 세종(1)
- (주요내용) 지자체별로 단지 주변 여건, 차량·사람 이동동선, 농가
   시설 등 위험요인을 고려한 차단방역 대책 마련·추진
  - \* 통제초소 설치·운영, 축산차량(알 운반 차량 등) 통제, 소독 강화, 계란 환적 등
- (점검·예찰) 산란계 밀집단지 대상 방역·소독실태 등 지도·점검\*
   (검역본부, 2주 1회) 및 농가별 폐사체 검사(지자체, 주 1회)
  - \* (점검내용) 진출입로 소독, 출입 차량 GPS 관리·소독, 이동통제 초소 운영실태, 밀집사육단지 내 방역·소독시설 운영 점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
  - \*\* 미흡사항 확인 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즉시 통보

- (신속 대응)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 사전 수립한 산란계 밀집단지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 \* 살처분 명령서 발부 시점부터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 72시간 내 렌더링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인력·장비 등 동원계획 마련

### 4 오리(종오리·육용오리) 예찰·검사체계 개선

- ㅇ 오리에 대한 강화된 예찰체계 구축으로 감염개체 조기 발견
  - 계열사는 종오리 농장의 종란 반출내역과 부화장의 종란 반입 내역을 매일 파악, 이상 확인<sup>\*</sup> 시 즉시 신고하는 이중 신고체계<sup>\*\*</sup> 구축
    - \*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 (1차) 종오리 농장 → <u>(2차) 부화장 사업자 + 계열화 주체</u>
  - 육용오리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육기간 중 2회 검사(평시 1회), 고병원성 AI 발생 시 3회, 발생 시·군은 4회로 검사 강화
    - \* (기존) 나주·영암·무안·함평·부안·고창·정읍+ 예찰지역(3~10km) 4회 검사, 그 외 3회 검사 → (강화) 발생 시·군 + 예찰지역은 4회(방역대 해제 시까지), 그 외 3회

### 5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 운영 강화

- (평시) 종축업,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 농가는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사전 신고
- (강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미흡농가는 미흡사항을 보완 후 지자체에서 입식 허용, 오리농가는 환경검사 추가
  - (사전 신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금을 신규 입식하기 전, 방역 점검을 통해 농가별 미흡사항 보완
  - · 농가(또는 계열사)는 가금 입식 7일 전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실태 점검표 및 입식 사전 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 \* 계열사 위탁농가는 계열사가 점검 후 제출 →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를 하고, 보완이 확인된 이후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관할 지자체는 입식 사전 신고서(방역실태 점검표 포함)를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 조치 확인 후 입식 허용
    - \* 지자체는 입식 기록을 관할 방역본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전산등록)에 통보

- (오리 입식) 오리 농장은 입식 전, 환경검사 및 방역·소독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종 가금 입식 허용
  - · (환경검사) 환경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경우, 오리 입식 허용
    - \* 축사 바닥·벽면·토양, 전실, 기계·장비, 차량 바퀴·운전석·발판, 신발(장화) 바닥 등
    - ※ '양성'인 농장은 발생농장에 준한 청소·세척·소독 완료 후, 재차 환경검사 실시
- · (현장점검) 오리농가의 입식 전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방역·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KAHIS에 점검결과 입력)
  - \* 동절기 대비 방역점검을 받지 않은 오리농장(KAHIS에 점검 이력 미확인 포함), 오리로 축종을 전환하는 농장 등은 2단계 점검(시군→검역본부) 후 입식
  - ※ 검역본부는 현장점검 결과(미흡 농장)를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미흡사항 보완조치

< 오리농장 입식 승인 절차 >

- ▶ 오리농장 : 입식 사전 신고 → 환경검사 → 지자체 점검 → 승인
- ▶ 휴업등 농가 : 입식 사전 신고 → 환경검사 → 2단계 점검(시군→검역본부) → 승인

#### ⑤ 강화된 가금 입식 및 출하 관리체계 운영

○ (입식·출하) 축사 내 사람·장비 등 출입 최소화 및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위험시기별 입식·출하기간을 달리 조정·운영

축종	특방기간	고병원성 AI 발생기간(야생조류 검출 포함)
육계	5일 이내	5일 이내
육용오리	3일 이내	1일 이내 (다만, 1일내 출하가 어려운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 이내 동별 출하*)

- \* 계열사 도축장의 일일 평균 도축 능력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 등의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미출하분 격리 조치, 소독 실시 등) 하에 3일 이내 동별 출하
- (입식 제한)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출하작업을 실시하고, 출하 후 14일간 입식제한 기간 운영\*\*
  - \* 관할 지자체에 출하전 신고 및 지자체 공무원의 감독 하에 출하, 상차반 진입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출하 등
  - \*\* 입식제한 기간 운영은 11월부터 실시하되,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시에는 즉시 시행
- (검사증명서) 가금 일제 입식 및 출하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운영
  - \* 시료 채취는 출하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
  -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시행은 10.6일 출하분부터 적용하되, 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확인 시 즉시 시행

- (특방기간) 시료 채취일로부터 오리 4일, 닭(노계·전통시장 출하가금) 6일, (발생 시) 발생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추가 단축 조치(오리 2~4일)
  - \* 농가는 출하 7일 전까지 사전 신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농가의 출하 일정을 고려,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조기 완료하되 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추가 검사

### 7 농장 → 축사 내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

- (방역수칙)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자체 및 검역본부에서는 관련 내용 지도·안내 강화
  - (사람)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발판소독조 사용, 축사전용 작업복(또는 방역복) 착용
  - (장비·물품) 파레트·난좌·합판 등의 외부 방치를 금지하고, 축사 내로 반입할 경우, 반입 전 반드시 소독
  - (야생동물) 야생조류, 쥐, 고양이 등 차단을 위해 축사·퇴비사 차단망 설치, 구서작업 등 철저, 사료 등 잔존물 방치 금지
  - (출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또는 쪽문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등

### 2. 위험도 기반 정밀방역

### ①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 농가 집중 관리

- (위험농가 관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를 정밀\*하게 선별\*\*하여 농가 단위 강화된 방역관리
  - \* 과거 발생 현황, 지리적 여건, 역학적 특성, 소독·방역시설 수준 등 종합적으로 평가
  - \*\* (현행) 중점방역관리지구(582개 동·리) 내 모든 가금농장(1,504호) 관리 → (개선) 지구 (655개 동·리) 내 고위험 농가를 정밀하게 선별(1,920호 중 692호\*\*\*)하여 집중 관리
- \*\*\* (축종별) 닭 325호(육계 118, 산란계 164, 토종닭 26, 종계 17), 오리 359호(육용오리 337, 종오리 22), 메추리 8호(단, 오리 사육제한 결과 등에 따라 관리대상 농가 수 변경 가능)

-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별된 농가는 분기별 방역실태 점검, 환경 검사 추가(월 1회), 매일 소독 등 강화된 방역관리 적용

####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강화된 방역 관리방안 >

1	점검	▶ 특방기간 중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 농가의 법정 소독설비·방역 시설 구비, 행정명령·공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점검 * (육용오리·산란가금) 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 (육계 등) 계열업체 점검반
2	검사	▶ 취약축종(산란계·오리) 농장 내·외부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 검사 <sup>*</sup> 를 추가(월 1회)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시 검사물량 확대(필요 시) * 진입로·마당, 전실, 축주 또는 종사자 신발 바닥, 농장 차량 등(대상별 5점)
3	소독	▶ 철새도래지·하천·저수지·소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
4	조기 출하	▶ 발생 시, 출하일이 근접한 가금(육용오리 등)은 계열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농가별 출하일령 관리
5	수매· 도태	▶ 발생 시, 방역지역(~10km) 내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적극 유도
6	교육	▶ 가축 사육 또는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차단방역 교육(연 1회)

### ② 고병원성 AI 고위험 관리지역 지정 및 강화된 방역관리

- (다발지역 관리) 과거 다발 지역인 전국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 (전남)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경기) 평택, 안성, 이천, 화성, 김포, 포천, 여주 / (전북) 정읍, 부안, 고창, 김제/(충북) 음성, 청주, 진천/(충남) 천안, 아산, 예산/(세종)
  - **(발생 前)** <sup>①</sup> 농장 점검, <sup>②</sup> 민간임차 및 공동방제단 추가 투입으로 소독 강화(1일 2회 이상), <sup>③</sup> 방역수칙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
  - (발생 中) 지역적 오염도와 위험도를 감안하여 육용오리 조기 출하, 검사주기 단축,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등 추진
    - \* (예시) 500m 내 전축종 + 발생 시·군 1km 내 전 축종, 오리 1km 또는 2km 살처분

#### ③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기준 강화(30만수→20만수)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업적 영향이 크고, 종 보존 가치가 높은 농장 출입구에 통제초소 설치·운영으로 차단방역 강화
  - (설치대상)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원종계, 종계, 원종오리, 토종닭 순계 등 지자체 선정 위험 농가
    - \* ('22/23년) 30만수 이상 → ('23/24년) 20만수 이상
    - ※ 시·군에서 위험도 평가 및 시·도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설치·운영 대상 조정 가능
  - (출입절차) 통제초소 설치대상 농장은 3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 초소→농가) 소독 완료 후, 해당 농장으로 출입 가능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축산 차량의 출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운영시간 조정
- 지자체는 통제초소 및 근무자 등에 대한 주기적(2주 1회) 점검\*
  - \* 근무자 대상 근무요령 등 방역교육 실시, 소독설비 적정 운영, 소독시간 준수, 축산차량·사람 이동통제 및 소독필증 확인 등

### ④ 오리 사육제한 명령 제도 시행

- (추진목적)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해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저감
  - \* 오리는 임상증상이 없거나 미약하여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전파・확산의 主요인으로 지적
- (제도 변경) 그간 자발적 참여 농가에 한해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가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령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
  - \* 사육제한 명령 국비 지급 및 지원 비율 마련, 사육제한 명령 지역 구체화 등
- (적용대상)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지역 오리농장
- **(적용기간) '23.11월 ~ '24.2월**(발생 위험성이 높은 4개월)
  - \* 농장별 출하시기를 고려, 시기를 당겨 실시 가능(발생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 가능)

- (사육제한 명령)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고위험 오리농장 선정·명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제6항에 따른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고위험지역\*, 동·리 단위) 선별
  - \* <sup>®</sup> 최근 5년간 반경 3km 내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지역, <sup>®</sup> 최근 5년간 야생 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 <sup>®</sup> 가금농장 밀집지역(500m 내 10호, 1km 내 20호 이상) 해당 지역 등
  - 고위험 오리농장\*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방역 우수농가 제외 등 대상농가 확정 후 사육제한 명령
    - \* 위험도 항목 2 이상 지역(리) 농가 / 위험지구 내 '22/'23년 발생 또는 최근 5년간 반복발생 지역(리) 농가 / 반복발생 지역 중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가 / 최근 5년간 ('18년~) 오리 발생지역(리) 농가, 산란계 또는 종계 인근(500m 이내) 농가

### 5 ICT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기반 조성

- (ICT 활용)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거점소독시설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관리 강화
  - \* 출입차량 번호 인식 정보를 KAHIS와 연계하여 거점소독시설 출입 여부 등 확인
  - 축산차량 GPS 정보를 확인하여 행정명령\*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 지자체 공유
    - \* 출입 금지 철새도래지 출입,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도 평가·예측 모델 구축(~'24)
  - 다양한 환경, 방역, 전파변수(야생동물, 농장환경, 농장구조, 종사자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구축, 방역 현장에 활용

### B 농장 간 확산 방지(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 ◈ 가금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차량·물품 등 이동통제

⇒ <sup>①</sup> AI 발견 즉시 강화된 검사 시행으로 조기 발견, <sup>②</sup> 발생농장 신속한 살처분, <sup>③</sup> 행정명령 발령으로 사람·차량 이동제한 등으로 확산 방지

### 1. 검사 및 초동 대응 강화

#### ① 가금농장 AI 정밀검사 강화 : 모든 축종 정기적인 정밀검사(PCR)

- (검사주기) 발생 위험도에 따라 시기별 검사 주기를 달리 운영
  - 평시와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발생 시에는 검사주기를 추가 단축하여 운영\*
    - \* (예시) 산란계 검사주기 : (평시) 분기 1회 → (특방기간) 월 1회 → (발생 시) 2주 1회 < 축종별 Al 정기검사 주기 >

		특별방역 대책기간	검출(발생) 시기					
가금축종	평시	('23.10월~'24.2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그 외 지역				
산란계	분기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종계	분기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메추리	분기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종오리	분기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5일 1회 (보호지역	2주 1회 (출하 전 포함)				
토종닭	전통시장 출하전	월 <b>1회</b> (전통시장 출하 전 포함)	해제 시까지)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육계	-	분기 1회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포함)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사육기간 중 2회 (25일령, 출하 전)		사육기간 중 3~4회* (3회: 25일령·35일령·출하 전)				
기타가금**	반기 1회	특방기간 중 1회 추가		특방기간 중 1회 추가				

# \* 발생 시·군 및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 (24일령·31일령·38일령·출하전) 정밀검사 실시(방역대 해제 시까지)

- \*\* 기타 가금(6종) : 꿩, 칠면조, 타조, 관상조, 거위, 기러기
- (발생 시 검사 강화조치)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축종(필요 시전 축종) 일제검사 및 전(全) 축종 출하전 검사 실시
  -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전 축종 일제 검사 및 반경 3km 내는 보호지역 해제시까지 5일 주기 정밀검사(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포함)

- 계열사는 종오리 농장의 종란 반출 및 부화장의 종란 반입 정보를 매일 확인하여 이상 확인\*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 시
-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육기간 중 2회 검사(평시 1회), 고병원성 AI 발생 시 3회, 발생 시·군은 4회로 검사 강화
  - \* (기존) 전남 나주·영암·무안·함평, 전북 부안·고창·정읍 + 예찰지역(3~10km)은 4회 검사, 그 외 3회 검사 → (강화) <u>발생 시·군</u> + 예찰지역은 4회(방역대 해제 시까지), 그 외 3회 ※ 다만, 조기 출하 시(40일령 이하)에는 사육기간 중 3회 검사 실시

#### ②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한 AI 정밀검사 확대

- (민간검사 확대) 위험시기 검사물량 급증\*으로 정부만 검사하는 체계로는 한계 봉착, 민간기관과 정밀검사 업무를 분담하여 대응
  - \* 검사건수(천건) : ('14) 179 → ('19) 409 → ('20) 480 → ('21) 785 → ('22) 612
- 정밀검사 역량 및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의 AI 정밀검사를 확대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 \* ('22/23년) 864건 → ('23/24년) 4,600건(432%↑)
- (정확도 제고) 특방기간 중 AI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병성감정 기관의 검사능력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정도관리 실시(검역본부)

### ③ 고병원성 AI 확진 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 (항원 검출) 야생조류에서 H5/H7형 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 방역관리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금농가 소독·예찰 등 예방적 방역조치 수행 \*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 방역본부는 항원 검출지에 초동 통제인력을 배치하고, 고병원성 확인 시 지자체(환경부서)에서 예찰지역 해제 시까지 지속 관리

- (고병원성 확진) 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시,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으로 격상하여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
  -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AI 전파 상황 판단과 자문을 위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모든 지자체는 '심각' 단계 발령 즉시,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AI 확산 방지대책 추진, 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 등 총력 대응
- (역학 관련 긴급방역)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소독 및 긴급 AI 정밀검사 실시
  - 지자체 1차 역학조사 결과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하여 방역조치 대상 역학 관련 농가·축산시설·차량 선별
  - 이후 중앙역학조사반(검역본부)의 추가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역학 관련이 확인되는 농가·축산시설·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관리

### ④ 지역 단위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운영

- (살처분 범위 조정) 지난 동절기 살처분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지역(시·군) 단위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본격 운영
  - \* ('21/22) 47건 발생, 730만수 살처분(건당 15만수) → ('22/23) 75건 660만수(건당 8.8만수) 건당 58.7% 감소 효과
  - 동일 시·군에서 3건 이상/집중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지역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
  - \* 정확한 발생상황 예측과 평가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



[지역별 살처분 범위 조정 예시]

○ (범위 일부 조정) 지자체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와 협의

#### < 예방적 살처분 범위 주기적 조정체계 >

구분	세부 내용
조정 체계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통해 <u>초기 살처분 범위</u> 를 설정하고, <u>2주</u> <u>마다 위험도</u> 를 <u>재평가</u> 하여 <u>예방적 살처분 범위</u> <u>조정</u>
기본 범위	▶ <u>발생농가 500m 이내 전 축종</u> , <u>500m~3km는 동일 축종</u> *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단, 육계는 500m~3km 살처분 제외) * 산란계, 육계, 메추리, 산란종계, 육용종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등으로 구분
초기 범위	<ul> <li>▶ '23/24년 위험도 평가 결과, '500m 이내(관리지역)*' 全 축종 살처분(다만,</li> <li>소규모 농가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농가만 실시)</li> <li>*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최초 2주('23.10.1-14.), 살처분 범위 조정 시 지자체 등 통보</li> </ul>
방역대 관리	<ul> <li>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 미실시 농가 검사 강화, 이동제한·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수평전파 차단</li> <li>(검사 강화) 발생 3일 내 방역대(~3km) 내 일제검사 → 이후 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5일 단위로 정밀검사 실시</li> <li>(이동 제한) 방역대 해제 시까지 감수성 가축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li> <li>(소독 강화) 가금농장·시설 진입로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1일 1회 이상)</li> </ul>

#### 5 발생시기 전화예찰 강화

- (평시·특방기간) 기관별 중복 예찰 방지 등을 위해 '전화 예찰용 공통 표준 질문서'에 따라 방역본부에서 전화예찰 실시
  - 일률적 전화예찰이 아닌 농장주 책임 하에 스스로 방역상황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알림톡\*'을 적극 활용, 농가 주도 예찰
    - \* 전업농은 알림톡으로 예찰하고, 고령 및 소규모 사육 농가는 전화예찰 방식 유지
  - 전화예찰 중 의심축 확인 시, **농식품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초동방역팀 투입 추진
- (발생 시) 지자체·방역본부 간 업무 분담 및 전화예찰 주기 단축\*
  - \* (평시·특방기간) 20수 이상(월 1회), 20수 미만(분기 1회) → (발생 시) 매일
  - 지자체는 관리지역(500m 이내)·보호지역(500m~3km), 방역본부는 예찰지역(3~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매일 실시
    - \* 발생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방역본부에 전화예찰 지원을 요청할 경우, 방역본부는 인력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 살처분 등으로 예찰 대상이 없을 경우 전화예찰 미실시, 방역본부는 3회 연속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통보 → 통보받은 지자체는 현장 방문

### 2. 수평전파 차단조치

#### ①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

- (행정명령)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세부내역 별첨 참조) 시행
  - **(적용기간)** '23. 10. 1. ~ '24. 2. 29.(단, 필요 시 축소 또는 연장 가능)
    - \*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 시 즉시 시행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중앙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하여 위반농장은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 \* 검역본부에서 오리,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
  - (추진절차) 지자체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및 시행('23.10.1~)
    - \* 위반 시「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공고)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8개) 시행
  - \* 위반 시「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②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행 및 발령체계 개선

- 의사환축\* 발생 시부터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추진
  - \*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에 걸렸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금농장에서 최초 발생 시, 신규 시·도 발생 시,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즉시 발령\*하되,
    - \* 역학조사 결과 및 철새도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 결정, 시·도 자체 명령은 농식품부와 협의 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개최 후 시행
  -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에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명령 추진

- <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기준 >
- 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전국 최초, '') 전국 단위 또는 3개 이상 시·도, ''') 36시간 초과 발령 시
- ②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i) 시·도 내 최초, ii) 시·도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iii) 36시간 초과 발령 시
- ③ ①·② 외의 경우에는 역학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심의 가능
- 항역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이동제한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제한 점검 강화

#### ③ 방역 취약요인 관리 및 점검

- (상시 점검) 취약축종(오리·산란계) 및 취약요인(동일소유주, 가족농장 등)이 있는 농장을 중심으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특방기간 동안 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10개소) 및 각 지자체 (시·도/시·군)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
  - \* 점검반은 2인 1조로 구성, 센터별 2개 반, 시·도별 1개 반, 시·군별 1개 반 이상 편성
- (전통시장·계류장) 토종닭 등 판매 전통시장 및 계류장 등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주기적 점검(지자체)
  -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운영(특방 월 2회 → 발생 시 매주)하고, 지자체는 이행 여부 점검
    -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5일 장은 시장이 열리는 날 탄력적 운영)에 가금 판매소(어리장)·계류장·가금운반차량을 일제히 비우고 청소·세척·소독 실시
  - \*\* 지자체는 농협 공동방제단 등 활용, 가금판매소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소독
  -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매·도태) 지자체는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
   발생 시 피해가 큰 농장 주변 방사사육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 (노계·소규모 농장) 노계(산란계·종계 등) 전문 사육농장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가금 유통 관리 강화
  - 산란계·종계 노계는 도축장으로만 출하하고, 전통시장 및 타 가금사육 농장(노계 전문 사육농장 등)으로 이동 금지
    - ※ 산란계·종계(육용·산란·토종 등) 노계는 도축장 외 이동승인서 발급 금지
  -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시행 및 이행 여부 점검
    - \* 다만, 법정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가축 방목 허용 가능

#### ④ 위험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역조치 개선

- (출하 개선) 살처분 정책 변경으로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보호지역(~3km) 내 육계의 출하 절차 개선
  - 보호지역 내 육계(삼계 포함)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인접 시·도와 협의, 해당 계열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 \* 24시간 내 출하전 검사 음성 및 전 두수 출하, 당일 임상 관찰, 공휴일 도축 원칙 (당일 출하 마지막 도축), 별도 구획 계류, 도축장·출하차량 등 환경검사 등
- (오리 입식) 엄격한 조건 하에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제한적 허용
  - <sup>i)</sup> 강화된 시설과 <sup>ii)</sup> 요건을 갖추고, <sup>iii)</sup> 방역수칙 준수, <sup>iv)</sup>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위험도가 낮은 농가에 한해 허용

<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 세부기준 >

기준	세부기준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가 된 농장
	▶ 철재 또는 판넬 형태(비닐하우스 농가 및 무허가 농가 제외)
시설 조건	▶ 왕겨를 사용하지 않는 고상식 축사/또는 축사 내 사육기간 동안 사용하는 왕겨 비축장소(왕겨창고 등)가 있고, 왕겨 살포기 및 로터리 장비가 출입하지 않음
	▶ 분동을 하지 않거나, 분동 통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
	▶ 축사 내 장비·기구 등을 보관
방역	▶ 농장 간 농장주 및 종사자가 교차 근무하거나 교류하지 않음
요건	▶ 농장 간 기구·장비·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음
방역 수칙	▶ 2단계 점검 결과( <b>1차</b> 지자체 → <b>2차</b> 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준수
지리적	▶ 철새도래지, 하천, 저수지 등과 연접하지 않음
여건	▶ 가금 밀집단지 등과 500m 이상 이격
기타	▶ 예찰지역 내 반복 발생이 없고, 다발 계열사 소속 농장이 아닐 것

- (방역지역 설정) 방역지역 설정 방법 변경 및 지정기간 현실화
  - (야생조류)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3km 내는 발생 당시 방역 지역 유지, 3~10km의 경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재설정\*
    - \* 당초 방역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은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 적용
  - (가금농가) AI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 해제기간 조정(30일→28)
    - \*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28일이 지난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 해제(現 30일)

## 4 방역 지원체계 확립

◈ 계열사 및 가금농장 스스로 책임방역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1. 방역주체별 책임방역

### □ 계열사 책임 방역체계 확립

- (계열사 책임방역) 계열주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
  - **(제도화)** 계열사의 방역관리 계획 승인·운영\* 및 계약사육농가 방역기준 위반사항 개선조치\*\* 의무 등 법제화\*\*\* 추진('24.상)
    - \* 계열사는 2년 주기 '방역관리계획' 수립 → 시·도지사의 승인 및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 계열사의 계약사육농가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후 지자체 보고
  - \*\*\*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23.8.23. 발의)로 가전법 개정 추진 중
  - (자체 점검) 계열사는 방역점검팀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
  - (사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을 대비하여 발생 계열사의 신속 대응력 제고를 위한 도상훈련(CPX) 실시
    - \* 계열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이동제한, 소독 등 계열사 역할 숙지

- (즉시 신고) 계열사는 소속 위탁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 확인 등 관련 정보 입수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발생 계열사 조치) 발생 계열사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 (검사 강화) 발생기간 중 발생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 도축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계열사 계약사육농가 일제 정밀검사\*\* 실시
    - \* 도축장 : (현행) 발생 계열사 도축장 출하 오리농가 60% 검사(14일간) → (강화) 발생 단계별 검사 강화(1차 발생 : 60% → 2차 : 80% → 3차 : 100% 검사, 14일간)
  - \*\* 농장 : 계열사 소속 위탁 사육농가 일제 정밀검사(확진 후 1주일간)
  - (합동점검) 발생상황 등을 평가하여 다발한 계열사의 본사, 소속 시설 및 위탁사육 농장 등에 대한 합동 점검(농식품부 + 지자체)
  - (정보 공개)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열사 AI 발생현황 공개
  - (재발 방지) 계열사 발생 경위 파악, 미흡사항 확인·개선 등 자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보고(필요시 농식품부 보고)

### ② 가금 생산자단체와의 방역 협력체계 구축

- (협업 체계) 가금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는 AI 발생 위험정보 공유, 축종별 방역수칙 교육·홍보 등에 긴밀 협조
  -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발생 농가 미흡사항 정보,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회원 농가 대상 SMS 등 교육·홍보
  -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독려 및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 자체 점검 협조
    - \*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 ③ 가금농가 및 축산차량 운전자 등의 방역 수준 · 역량 제고

 (인식 개선) 전문화된 방역교육을 통한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출입차량 운전자 등) 등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 추진

-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농장주·종사자, 농장 상시 출입자(사료·분뇨· 알 운반 등), 계열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교육\*(7~10월)
  - \* AI 발생 현황, 위험요인 및 전파 위험성, 농가 미흡사항 및 보완방안, 차단방역 수칙 및 소독요령, 방역 준수사항 등을 지역(권역)별로 순회 교육
-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 위험 요소를 인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예방조치를 생활화하는 등 농가의 능동적인 방역역량 유도
- (시설 개선) 전실 보완, 소독설비 설치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받는 가금농가(오리·닭)에 시설지원 확대(5천만원 → 1억원)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4.18.)으로 가금농가 소독·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 우수한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갖추어 농장(축사) 내 바이러스 유입 및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축산차량 관리) 농장 출입 등록의무 대상 차량 확대\*로 미등록 축산차량 관리 강화
  - \* (현행) 가축의 소유자 등이 소유·임차한 화물자동차 → (확대) 현행 + <u>승용·승합차</u>
  - 미등록 축산차량 및 GPS 미장착 차량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 등 예방조치(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협조)
  - 지자체 등을 통해 특방기간 중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엄중 조치

### 2. 지자체 및 민간 지원 강화

### ① 거점소독시설 운영(특방기간 144개 시·군 230여 개소) 및 관리 강화

- (거점소독시설) 가금 사육농가 소재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산차량 통행시간 및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조정

- (운영 점검)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 (검역본부) 월 단위 지도·점검, (지자체) 2주 1회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이외 사료공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부화장, 식용란선별 포장업 등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및 소독대장 등 관리·점검(매월)
  - 근무자 근무요령 숙지 상태, 차량·대인 소독실시 여부 및 적정성, 생축·분뇨 운송차량 별도 소독 실시 여부 등
- (환경검사) 소독시설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해 거점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검사\*(2주 1회, 지자체) 실시
  - \* 진입·진출로(정문), 소독터널 출·입구 바닥(차량 동선), 차량바퀴 세척시설 바닥, 차량소독시설 바닥(소독조), 대인소독실 및 사무실 손잡이·발판소독조 등
- (소독필증)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前),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축산차량)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생축 운송) 지정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에 출입하는 생축 운송차량은 도축장 출입 시 농가 서명을 받은 소독확인증 제출\*\*
    - \* 자체 세척·소독 매뉴얼 적정성 여부 등 점검(지자체), 소독 유효성 평가 및 소독수 농도검사(지자체+검역본부)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가금 도축장
  -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농가가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함
  - ※ 생축을 상차한 농장에서 소독 실시 → 소독확인증에 농가 서명 → 거점소독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도축장 이동 → 소독확인증 제출 및 소독 실시 후 진입
  - (분뇨 운송) 오염원 적재 가능성에 따라 일반 축산차량과 교차 오염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부지 내 별도의 공간에서 소독\*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분뇨차량 전용 거점소독시설 별도 운영

#### ② 방역차량을 활용한 가금농장 소독 강화

- 지자체 및 농협 방역차량 활용\*, 가금농장 진입로 및 주변 소독 지원
  - \* 지자체별 임차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농협 방역차량 동원
-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공동방제단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지점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진입로 및 주변 매일 소독 지원\*
  - \* 농장·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 **과거 다발지역**\*(24개 시·군)은 **임간임차** 및 **공동방제단**을 **추가 투입**하여 **소독 강화**(1일 2회 이상)
  - \* (전남)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경기) 평택, 안성, 이천, 화성, 김포, 포천, 여주 / (전북) 정읍, 부안, 고창, 김제/(충북) 음성, 청주, 진천/(충남) 천안, 아산, 예산/(세종)

#### ③ 가금농장 전담관제 내실화

- (기존) 전담관은 업무 부담으로 전담관 업무를 기피, 농장주는 중복한 예찰로 인한 피로 호소 및 행정 지원 거부 등 민원 발생
- (개선) 특방기간 중 '자가진단 알림톡'으로 일상적인 홍보·조사를 실시하고,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전담관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 (평시) '자가진단 알림톡' 활용 등 IT 접목, 농장주 자율방역 유도
  - (발생시) 가금농장 전담관 **사전 지정** 및 **발생 시 전화 예찰 등 활용**으로 전담관 업무 부담 경감,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 방역본부는 평시, 특방기간 중 '자가진단 알림톡'을 통해 지속 홍보 및 예찰 실시
- ▶ 전담관은 질병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농가대상 전화예찰 등 실시
- · 발생 시,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발생 정보, 발생농장 미흡사항, 추정 원인 등의 정보를 전파하여 축산농가 경각심 제고 추진
  - \* 전담관은 가금농가에 홍보 메시지 문자(SMS) 전송 또는 육성으로 직접 전파

### Ⅲ. 비상 방역체계 운영

- □ **(운영기간) '23.** 10. 1. ~ '24. 2. 29.(단, 발생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철새가 본격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부터 과거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많았던 기간 동안 방역역량 집중
  - → AI 특별방역기간 시작('23.10.1.)부터 AI 위기단계 격상(관심→주의)
    - \* (상황실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종별 생산자단체
- □ (근무체계) 8인 1조 근무, 24시간 비상체계 가동(구제역·AI 합동근무)
  - (근무 편성) 농식품부 방역정책국(3), 검역본부(3), 방역본부(2)
    - 방역정책국(3): 방역정책과(1), 구제역방역과(1), AI 방역과(1)
    - 파견근무(5) : 검역본부 3(사무관 1\*, 공중방역수의사 2\*\*), 방역본부 2
      - \* 사무관은 가금농장 발생 시부터 파견 / \*\* 24시간 교대 근무(4인 2개조)
  - **(근무시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장소 : 농식품부 종합상황실 4층)
    - 근무시간 : [평일] 09:00~21:00, [공휴일] 10:00~18:00
      - \* 상황실 전화번호 : 구제역(044-201-2675), AI(2677), FAX : 044-868-9027
    - 근무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착신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 □ (상황반 편성) 3개반(종합상황반, 구제역 대책반, AI 대책반)으로 구성
  - (상황실장) 방역정책국장 \* 구제역·AI 발생시 차관으로 상향 조정
  - (인원 구성) 방역정책국 전 직원 및 파견자 8명

	<b>상황</b> (방역정	실장 책국장)	
종합상황반	구제역	대책반	AI 대책반
- 반장 : 방역정책과장 - 반원 : 방역정책과	- 반장 : 구저 - 반원 : 구제	세역방역과장 세역방역과	- 반장 : AI방역과장 - 반원 : AI방역과

※ 현재 운영 중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과 병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주요 임무) 각 기관별 상황실 운영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분석 및 대책 마련
  - 각 기관별 상황실 운영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 기관별 상황실 운영(근무조 편성 등 자체계획 수립) 실태 확인·점검
    - AI 신고접수 현황, 소독·홍보 등 국내 방역추진 상황 확인·점검
    - 해외 가축질병 동향, 축산관계자 소독 등 국경검역 추진실태 점검
  - 각 기관별 상황실 추진실적 취합·분석 및 방역대책 마련
    - 각 기관 및 지자체는 **주간 방역추진 실적을 월요일\* 12:00**까지 **농식품부 상황실에 매주 보고** 
      - \* 실적취합 시기는 영상회의 등 일정에 따라 조정 예정
    - 매주 주간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 □ (對 국민 홍보) 기관별 구제역·AI 행동요령·방역수칙 등 홍보
  - (공통)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관련 현수막 게시, 기관별 홈페이지 팝업창,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캠페인 등
  - (검역본부) 상황실 운영, 중앙점검반(방역센터)을 동원하여 방역실태 점검, 축산농가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지자체) 전담관, 마을 방송, SMS 문자, 지방지 등 활용 홍보
  -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전체 농가에 대한 방역 홍보
  - (농협·생산자단체) 회원 농가 대상 SMS, 홍보지 등을 통해 홍보
- □ (영상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별 구제역·AI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주요 지시사항 시달

### Ⅳ. 향후 계획

- □ (추진사항 점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이행사항 지속 점검
  - 관계기관별 추진실적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농가 및 축산시설 등의 방역추진 사항 점검
- □ (상황실 운영) 10.1일부터 위기단계를 격상(관심→주의)하고, 관계기관,지자체, 생산자단체 상황실 운영
  - 농식품부 상황실 설치에 따른 원활한 상황실 운영을 위해 근무 인력 파견 조치(검역본부 5명, 방역본부 2명)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방역 상황실과 병행 운영
  - 상황실이 운영되는 관계기관(단체)에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
- □ (홍보·교육) 언론 홍보 및 지속적인 축산관계자 방역교육·홍보
  - 특별방역대책 관련 브리핑 실시('23.9.26.)
  -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SMS 문자발송, 점검회의(영상) 등

### 불입 1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 □ '21년부터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AI 유행 중 \* ('20) 1,566건 → ('21) 5,132(227%↑) → ('22) 7,307 → ('23.8.) 4,142(WOAH 기준)
  - O 다만, 금년 1~8월까지 세계적으로 전체(가금+야생)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5,608건→4,142), 야생조류는 14.7% 증가
    - \* 가금 : 70.9% 감소(2,675건→778), 야생조류 : 14.7% 증가(2,933건→3,364)
  - ※ 연도별 전체(야생+사육) HPAI 발생 현황(WOAH 발생 기준)

구분	발생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603	388	732	299	83	32	28	31	32	162	860	859	4,109
유럽	`22년	1,059	531	1,106	470	257	253	230	204	149	268	309	347	5,183
	`23.8.	552	672	547	208	439	325	252	47	-	-	-	-	3,042
아	`21년	156	78	19	7	15	9	8	11	8	12	33	137	493
사	`22년	48	80	81	65	41	38	64	22	5	16	102	110	672
아	`23.8.	86	62	101	21	4	1	4	-	1	-	1	-	279
	`21년	5	59	19	16	65	72	81	26	73	43	23	36	518
아프 리카	`22년	93	45	10	8	10	13	3	8	3	7	14	6	220
	`23.8.	11	5	19	13	12	10	11	34	ı	-	1	-	115
	`21년	-	-	1	-	-	-	-	-	-	-	9	3	12
아메 리카	`22년	20	36	172	307	191	45	59	39	20	69	110	164	1,232
- ' '	`23.8.	124	141	154	130	69	48	30	10	-	-	-	-	706
	`21년	764	525	770	322	163	113	117	68	113	217	925	1,035	5,132
총계	`22년	1,220	692	1,369	850	499	349	356	273	177	360	535	627	7,307
	`23.8.	773	880	821	372	524	384	297	91	ı	-	-	-	4,142

○ 여름철(6~8월) 전체(가금+야생)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978건→772)했으나, 야생조류는 비슷한 수준

\* 가금 : 71% 감소(242건→70), 야생조류 : 4.6% 감소(736건→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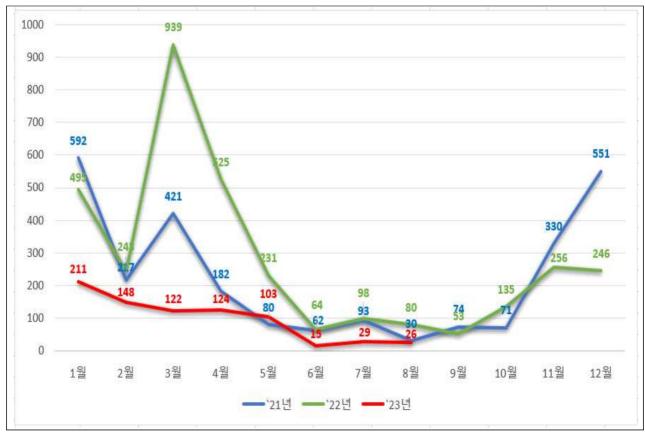
※ 연도별(1~8월) 전체(야생+사육) HPAI 발생 현황(WOAH 발생 기준)

발생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b>′21.1~8.</b>	764	525	770	322	163	113	117	68	2,842
<b>'22.1~8.</b>	1,220	692	1,369	850	499	349	356	273	5,608
<b>'23.1~8.</b>	773	880	821	372	524	384	297	91	4,142

## □ 연도별 사육가금 HPAI 발생 현황(WOAH 발생 기준)

구분	발생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453	96	384	161	27	5	5	4	5	26	286	404	1,856
유럽	`22년	379	146	782	307	133	9	22	33	33	95	170	134	2,243
	`23.8.	111	58	43	60	90	7	12	10	-	-	-	-	21
아	`21년	136	63	18	5	12	8	8	1	8	12	26	117	414
시	`22년	33	47	60	27	36	37	62	22	4	13	20	47	408
아	`23.8.	49	35	40	20	4	1	3	1	-	-	-	-	152
	`21년	3	58	19	16	41	49	80	25	61	33	18	30	433
아프 리카	`22년	82	41	7	7	9	10	1	8	3	6	12	5	191
	`23.8.	11	5	2	6	2	5	8	14	-	-	-	1	53
-1-11	`21년	-	-	-	-	-	-	-	-	-	-	-	-	0
아메   리카	`22년	1	9	90	184	53	8	13	17	13	21	54	60	523
	`23.8.	40	50	37	38	7	2	6	2	-	-	-	-	182
·	`21년	592	217	421	182	80	62	93	30	74	71	330	551	2,703
총계	`22년	495	243	939	525	231	64	98	80	53	135	256	246	3,365
	`23.8.	211	148	122	124	103	15	29	26	-	-	-	-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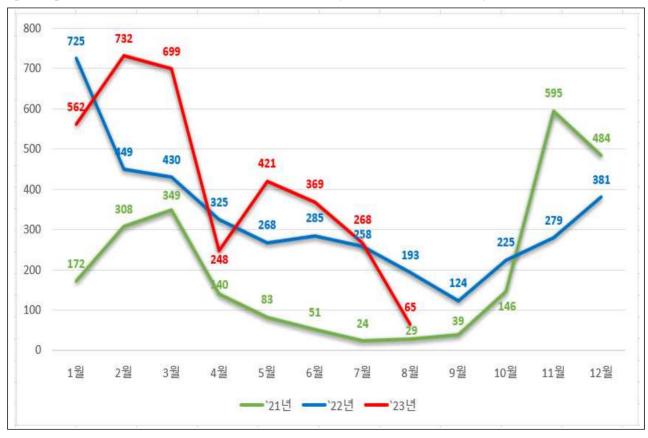
[표 1] 연도별 사육가금 HPAI 발생 현황(WOAH 발생 기준)



### □ 연도별 야생조류 HPAI 발생 현황(WOAH 발생 기준)

구분	발생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150	292	348	138	56	27	23	27	27	136	574	455	2,253
유럽	`22년	680	385	324	163	124	244	208	171	116	173	139	213	2,940
	`23.8.	441	614	504	148	349	318	240	37	-	-	-	-	2,651
	`21년	20	15	1	2	3	1	-	1	-	-	7	20	70
아마	`22년	15	33	21	38	5	1	2	-	1	3	82	63	264
	`23.8.	37	27	61	1	-	-	1	-	-	-	-	-	127
	`21년	2	1	-	-	24	23	1	1	12	10	5	6	85
아프 리카	`22년	11	4	3	1	1	3	2	1	-	1	2	1	29
' '	`23.8.	-	-	17	7	10	5	3	20	-	-	-	-	62
	`21년	-	-	-	-	-	-	-	-	-	-	9	3	12
아메 리카	`22년	19	27	82	123	138	37	46	22	7	48	56	104	709
' '	`23.8.	84	91	117	92	62	46	24	8	-	-	-	-	524
	`21년	172	308	349	140	83	51	24	29	39	146	595	484	2,420
총계	`22년	725	449	430	325	268	285	258	193	124	225	279	381	3,942
	`23.8.	562	732	699	248	421	369	268	65	•	-	-	-	3,364

[표 2] 연도별 야생조류 HPAI 발생 현황(WOAH 발생 기준)



# 불임 2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 1 검토배경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살처분 가금 최소화 도모

### 2 평가결과

### 1 특방 초기(10.1~10.14) 위험도 평가지표를 반영한 평가 결과

- 해외 지속 발생으로 철새로 인한 국내유입 가능성은 높고, 국내가급 사육농장의 약 39%(7,747호중 3,008)는 500m 이내에 밀집되어 있으며, 추가 발생(4호)이 있어 농장 간 전파 위험은 높은 편
- 다만, 특방 초기 2주간(10.1~14일)은 철새 도래 초기로 개체수가 적고, 가금농장에서 발생(가장 이른 발생 : '22.10.17.)한 적이 없음
  - 또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23.7.27.) 발표로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
- 소규모(비전업) 농가는 계열화가 없고, 500m이내에는 소규모농가 발생 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가금농가도 적어(1.3%, 101호) 전파위험 낮음

### 2. 적용 범위(10.1~10.14, 특방 초기 2주간)

□ '23.10.1~10.14일에는 발생농가 500m 이내 전 축종 예방적 살처분 (다만, 소규모농가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 발생 농가만 실시 가능)

### 3 향후 계획

- □ 2주\* 마다 AI 위험도 재평가(검역본부)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
  - \*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 발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 주기 변경
- □ 검역본부의 위험도 재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확대 또는 축소) 필요 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후 범위 조정(농식품부)

### 참고 1

# 시기별 위험도 평가 주요 지표

### □ 특별방역대책 초기(10.1~14일)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①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	
	∘ 해외 유행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형	
	∘ 해외 유행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특성	
②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위험	∘ 국내도래 철새 이동경로 상의 해외 국가 위험도	
	∘ 해외 및 국내 고병원성 AI 검출 철새 동일 종	
③ 과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특성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간 거리	
	∘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과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간 거리	
	∘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과 발생농장과의 거리	
	∘ 과거 수평전파 및 방역대 내 발생의 축종	
④ 가금농장 방역체계	∘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준	

### □ 특방 최초 2주부터 가금농장 발생 시까지 평가지표 (2주 단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① 철새 도래 양상	ㅇ국내 도래 철새 개체수	ㅇ전년 동기 대비 증감
	ㅇ국내 도래 오리과 (오리· 기러기·고니류) 철새 개체수	o전년 동기 대비 오리·기러기류 증감
	ㅇ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건수 대비 증감 평가
고병원성 Al 검출 (시료채취일 o	ㅇ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	o 최근 3년간 동기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시군수 대비 증감 평가
	ㅇ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시료	o Al 검출 야생조류 시료 종류 평가 *포획, 폐사체, 분변
	ㅇ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형	ㅇ고병원성 AI 아형에 따른 병원성 평가
	ㅇ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증감 양상	ㅇ전년 대비 검출 시기 변동 평가

# □ 가금농장 발생 시 및 발생 후 평가지표(2주 단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① 철새 도래 양상	ㅇ국내 도래 철새 개체수	o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국내 도래 철새 개체수 증감 평가
	ㅇ국내 도래 오리과 (오리·기러기·고니류) 조류 개체수	o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오리과 조류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개체수 증감 평가
② <b>야생조류</b> 고병원성 AI 검출 (시료채취일 기준)	ㅇ야생조류 고병원성 Al 검출 건수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건수 대비 증감 평가
	o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수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시군수 대비 증감 평가
	o 야생조류 고병원성 Al 검출 시료 종류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시료에서 폐사체 비율 증감 평가
	ㅇ야생조류 H5/H7 AI 항체 검출 양상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야생조류 포획검사 H5/H7 AI 항체 검출률 증감 평가
	o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형	o보고일 기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항 원형 확인
	o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증감 양상	o이전 2주 대비 최근 2주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증감 평가
③ <b>가금농장</b> 고병원성 AI <b>발생</b> (신고일 기준)	o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증감 평가
	ㅇ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수	o최근 3년간 동기 대비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증감 평가
	ㅇ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증감 양상	ㅇ평가일 기준 이전 2주 대비 최근 2주간 가금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증감 평가
④ 발생농장 축종 및 검출경위	o발생농장 축종	ㅇ평가일 기준 발생농장 축종 평가
	ㅇ발생농장 검출경위	ㅇ평가일 기준 발생농장 신고에 의한 검출 및 예찰간 비율
	ㅇ발생농장(오리) 항체 검출 여부	ㅇ평가일 기준 오리 발생농장에서의 항체 검출 여부 평가
⑤ 방역대 내 발생	o기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발생여부	ㅇ평가일 기준 전체 발생 농장 중 방역대내 발생 비율 평가 ㅇ최근 2주간 방역대내 발생농장 비율 평가
	o예방적 살처분 농장 항원 검출 여부	ㅇ평가일 기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에서의 항원 검출 비율 평가
⑥ 바이러스 특성	ㅇ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분리주의 병원성 및 전파력	○평가일 기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바이러스 유전형 수 평가 ○고병원성 AI 분리주의 닭과 오리에서의 병원성 평가 (임상증상, 전파능)
기 차단방역 조치	o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준	

## 참고 2 축종별 전파 위험도 분석에 따른 동일축종 범위

발생축종	축종간 전파 위험 분석 결과	살처분 대상축종(안)
오리 (종오리, 육용오리, 청둥오리 개량종)	- 오리 사육 및 유통은 계열화 체계이며, 계열 농장간 가축운반·상하차 인력·사료차량 등 공유	오리 (종오리, 육용오리, 청둥오리 개량종)
산란종계 (중추 포함)	- 산란종계 고유 체계에서 사육	산란종계 (중추 포함)
육용종계 (중추 포함)	- 육용종계 고유 체계에서 사육	육용종계 (중추 포함)
산란계 (중추 포함)	- 사료·알·분뇨 운반 차량이 빈번하게 농장출입	산란계 (중추 포함)
육계 (삼계 포함)	- 육계는 계열화 체계, 삼계도 계열사를 통한 운영이 증가 추세 - 육용 계열사에서 품종 구분 없이 사료 차량 이동, 육계·삼계 도축장 동일	육계 (삼계 포함)
토종닭	- 토종닭 계열사를 통한 운영 증가 추세	토종닭
메추리	- 입식, 사료운반 외에는 대부분 농장주 개인 차량 운영	메추리
특수가금	- 사료운반 외에는 대부분 농장주 개인 차량 운영	특수가금

### 붙임 3

## '23/'24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예찰지역(112개소)

ПС	기관별 구분			
시도	방역본부 (25개소)	환경부(87개소)		
서울 경기	강서지구, 서호, 상패천, 왕송호수, 문산천, 진위천, 남한강(양평-여주), 포천천	안양천, 탄천, 중랑천, 양화천-남한강(여주-충주), 팔당호, 청미천, 발안천-남양호, 시화호, 화성호, 한강하류(김포-고양, 장항습지), 복하천, 공릉천 중류, 공릉천 하류, 임진강, 신천(양주-동두천), 창릉천, 오산천, 안성천, 경안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용인-수원)		
강원	한탄강(동송읍), 토교저수지	남대천(양양), 남대천(강릉), 철원평야, 소양강 하류, 섬강, 원주천, 송지호		
충북	보강천	미호천, 무심천, 충주호, 금정저수지, 백곡저수지(진천), 달천		
충남	천수만, 금천, 도당천, 논산천	병천천, 봉강천, 풍서천, 곡교천, 아산호, 봉선저수지, 삽교천, 해미천, 간월호, 부남호, 풍전지-잠홍지-성암지, 석문간척지, 대호, 무한천, 예당저수지, 안기리(태안), 금강 중류(세종-공주)		
전북	조류지	동림저수지, 동진강(김제-부안), 동진강(부안-정읍), 만경강 중류(익산-완주), 만경강 하류(김제-군산), 전주천, 원평천, 금강호, 정읍천		
전남	대동저수지(함평),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 고막원천,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우습제), 고천암호, 금호호, 강진만, 영암호, 지석천, 황룡강, 담양습지, 반월제, 고흥만		
대구 경북	형산강	금호강(안심습지-경산), 낙동강(고령), 감천(김천), 해평(구미), 지산샛강(구미)		
부산 울산 경남	장척저수지, 양산천, 태화강	낙동강하구, 주남지-산남지-동판지, 우포-목포-사지포(창녕), 화포천, 사천만, 철마천, 해반천		
제주	-	하도리, 성산포(오조리), 서귀-안덕, 종달리		

<sup>\*</sup> 신규 추가 지점(2개소) 검토 후 지점명 확정 예정

## 불임 4 '23/'24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b>철새도래지 출입금지</b>	축산차량 및 종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b>축산차량</b> 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3	가금 <b>농장에 특정 축산차량<sup>*</sup> 외 진입금지</b>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행정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23.10.1.~ ′24.2.29.	1년
명령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필요시	이하의
(10건)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확: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연장)	징역 또는 1천만원
	8	가금농장에 <b>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b>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이하의 벌금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sup>*</sup>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b>생석회 도포</b>	가금농장		
	2	축산차량 <b>소독필증 확인·보관</b>	가금농장		
	3	<b>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b>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공고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23.10.1.~ '24.2.29.	과태료 및 고병원성
(8건)	5	<b>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b>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필요시 연장)	AI 발생시 살처분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b>농장 부출입구로</b>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보상금 감액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b>축사의 뒷문</b> 등으로 <b>사람 출입 금지</b>	가금농장		<u> </u>
	8	가금농장 내로 <b>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b>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 붙임 5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

-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별 현황(위험지구 포함)
  - 11개 시·도, 74개 시·군·구, 283개 읍·면·동, 655개 동·리

	지정 현황	
1 제1종 가축전염병이 i) 최근 5년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최근 5년내 2회 이상 고함된 지역(동리) ii) 반복 발생한 지역(동리)		· 7개 시도, 26개 시·군·구, 70개 읍·면·동, 205개 동·리 · 7개 시도, 13개 시·군·구, 15개 읍·면·동, 15개 동·리
② 축산농가수가 반경 ! 20호 이상인 지역	· 5개 시도, 7개 시·군·구, 9개 읍·면·동, 13개 동·리	
③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 최근 5년간 야생조류 검출지점에서 i) 반경 10km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동리) ii) 반경 3km내 포함지역(동리)	· 10개 시도, 38개 시·군·구, 89개 읍·면·동, 123개 동·리 · 11개 시도, 68개 시·군·구, 214개 읍·면·동, 460개 동·리
	· 발생 우려지역	· 2개 시도, 2개 시·군·구, 3개 읍·면·동, 8개 동·리

<sup>\*</sup> 단, 지자체 및 검역본부 조사·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정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1.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 지역(동·리)

		0 =1 = =1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안성시	삼죽면(내장리) 일죽면(고은리,금산리,능국리,방초리,산북리,신흥리,월정리,장암리,죽림리,화곡리) 죽산면(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고안리,석천리,옥산리,용천리,장평리)
	이천시	설성면(대죽리,수산리,장능리,행죽리) 율면(본죽리,신추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고잔리,삼계리) 팽성읍(대사리) 합정동(합정동)
	화성시	남양읍(신남리,활초리) 양감면(사창리,용소리,정문리) 장안면(독정리,어은리,장안리) 팔탄면(구장리,해창리) 향남읍(구문천리,길성리,상신리,수직리)
	괴산군	감물면(백양리,이담리) 장연면(광진리,조곡리,추점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각회리,내송리,본대리,신평리) 삼성면(능산리)
	진천군	광혜원면(광혜원리,금곡리) 덕산읍(산수리,신척리,인산리,합목리,화상리) 이월면(동성리,미잠리,사곡리,삼용리,신월리,중산리) 진천읍(삼덕리,상신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u> </u>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시목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성산리)
	예산군	고덕면(상궁리,지곡리)
춰ᄔᆮ		동면(수남리,행암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관성리,도원리,매성리,병천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대홍리,복모리,성환리,신가리,신방리,안궁리,양령리,와룡리)
	고창군	성내면(신성리)
	남원시	송동면(흑송리)
		주생면(제천리,중동리)
		부안읍(신흥리)
		상서면(고잔리,용서리)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돈계리,백석리,사산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행안면(대초리)
		고부면(만수리,입석리)
	정읍시	소성면(고교리,화룡리)
		신태인읍(백산리)
	フェフ	정우면(대사리,우일리)
	고흥군	남양면(침교리)
		공산면(금곡리,동촌리,화성리)
		_ 관정동(관정동)
		대기동(대기동) 동강면(곡천리,대전리,대지리,운산리,월송리,월양리,인동리,장동리,진천리)
		ㅎㅎ한(국산니,네산니,네시니,눈산니,뇰ㅎ니,뇰ㅎ니,한ㅎ니,ㅎㅎ니,안산니)   동수동(동수동)
		ㅇㅜㅇ(ㅇㅜㅇ)   반남면(대안리,덕산리,신촌리,청송리,흥덕리)
		전급 전(대전대, 격전대, 전전대, 0 8 대, 8 국대)   봉황면(신동리, 욱곡리, 황용리)
	나주시	ㅎㅎ 건(건ㅎ니,꾹ㅋ니,ㅎㅎ니)   부덕동(부덕동)
		T ¬ 3 ( T ¬ 3 )   세지면(교산리,내정리,대산리,동곡리,벽산리,성산리,송제리,오봉리,죽동리)
		<u> </u>
		왕곡면(덕산리,본양리,신가리,신원리,신포리,양산리,옥곡리,월천리,
		장산리,행전리,화정리)
전라남도		윤곡동(윤곡동)
•		평산동(평산동)
		몽탄면(달산리,당호리,명산리)
	무안군	삼향읍(맥포리,왕산리,지산리)
		일로읍(감돈리,광암리,복룡리,산정리,용산리,죽산리,지장리)
		군서면(도장리,양장리)
		금정면(안노리)
		도포면(구학리,봉호리,성산리,영호리,원항리)
	영암군	삼호읍(용앙리)
		서호면(금강리,성재리,태백리)
		시종면(금지리,만수리,봉소리,신연리,신학리,신흥리,옥야리,와우리,월롱리)
		신북면(갈곡리,모산리,월지리,유곡리,학동리,행정리)
	장흥군	부산면(용반리,유량리,호계리)
		<u>장평면(기동리,양촌리)</u>
74 111 1 -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대천리,사곡리)
	하동군	옥종면(두양리,문암리,안계리,양구리)

### ①-2. 최근 5년 이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반복발생한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옥산리)
경기 <del>포</del>	화성시	향남읍(상신리)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조곡리)
るる古土	음성군	금왕읍(신평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신가리)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대사리)
	나주시	동강면(장동리)
		반남면(흥덕리)
전라남도		세지면(죽동리)
	영암군	시종면(신학리)
	장흥군	부산면(기동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진주시	수곡면(대천리)
	하동군	옥종면(문암리)

#### ② 가금농가 수가 반경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인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오지리)
경전도		철원읍(율이리)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봉현리)
	진천군	이월면(동성리,삼용리)
	김제시	용지면(신정리,용수리,장신리)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양산리)
		동진면(안성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신도리,중방리)

# ③-1. 최근 5년 이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 중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하잠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II 0 / I	101	연동면(문주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내유동)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구산동)
		금광면(삼흥리)
	안성시	보개면(동신리)
		서운면(신촌리)
거기ㄷ		일죽면(능국리,신흥리,장암리,화곡리)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당진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옥산리)
		마장면(해월리)
	\ \1+1 \ \ \	백사면(도립리)
	이천시	부발읍(가산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설성면(장천리)
		율면(신추리)
		고덕면(동고리)
		서탄면(마두리)
	평택시	청북읍(고잔리)
		팽성읍(대사리)
		포승읍(도곡리,석정리)
		선단동(선단동)
	포천시	신북면(삼성당리)
		영중면(거사리)
		창수면(주원리)
		남양읍(신남리,온석리)
	화성시	양감면(사창리)
		팔탄면(구장리)   하나요/그 명치의 사사의/
 강원도	원주시	향남읍(구문천리,상신리)   귀래면(주포리)
- 6世工	고 전투적 괴산군	장연면(조곡리)
	- 기근 -	ㅇ ᆫ ᆫ(ㅗㄱ니)   금왕읍(각회리,내송리,본대리,신평리)
	음성군	마용됩(국회리,제용리,단웨리,단용리)   대소면(삼호리)
		생극면(임곡리)
		광혜원면(금곡리)
++1	진천군	문백면(계산리)
충청북도		이월면(동성리,삼용리,신월리)
		북이면(화상리,화하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괴정리,도암리)
		대소원면(영평리)
	충주시	동량면(대전리)
		소태면(주치리)
	논산시	광석면(광리)
	서산시	부석면(갈마리)
	아산시	신창면(오목리)
		음봉면(산정리)
	예산군	고덕면(상궁리,석곡리) 더사면(사사기)
충청남도		덕산면(낙상리) 동면(화계리)
8 0 <u>0 T</u>		8 교(되게디)   병천면(매성리)
	천안시 동남구	<u>                                   </u>
		풍세면(가송리,보성리,용정리)
	+10111 1111 7	성환읍(대홍리,도하리,신가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수헐리)
	홍성군	갈산면(운곡리)
전라북도		고수면(봉산리)
	고창군	아산면(성산리)
		흥덕면(사천리)
		공덕면(회룡리)
	김제시	금산면(용산리)
		만경읍(대동리)
	부안군	부안읍(신흥리)
		주산면(백석리,사산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익산시	신흥동(신흥동)
		소성면(고교리)
		영원면(앵성리)
	정읍시	옹동면(상산리)
		입암면(단곡리)
		정우면(대사리,우일리)
	구례군	용방면(신도리,용정리)
		공산면(가송리)
		동강면(장동리,진천리)
		반남면(흥덕리)
	나주시	봉황면(옥산리)
		산포면(등수리)
		세지면(교산리,동곡리,송제리,죽동리)
전라남도		왕곡면(덕산리)
	담양군	대덕면(비차리)
	무안군	일로읍(복룡리,죽산리)
	TUU	현경면(오류리,평산리,해운리)
	영암군	삼호읍(난전리,동호리)
	이 다 나	서호면(태백리)
		_ 나산면(삼축리)
	함평군	엄다면(송로리)
		함평읍(가동리,만흥리,진양리)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신당리)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동례리)
0007	김해시	한림면(신천리,안곡리,퇴태리)

### ③-2.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3km 내 포함되는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강동동) 대저1동(대저1동) 대저2동(대저2동) 식만동(식만동) 화전동(화전동)
O 7111	남구	옥동(옥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하잠리)
세종시	세종시	연동면(노송리,문주리) 연서면(봉암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관산동) 대자동(대자동) 선유동(선유동) 성사동(성사동) 신원동(신원동) 주교동(주교동)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산황동) 식사동(식사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고양시	가좌동(가좌동)
	일산서구	구산동(구산동)
		법곳동(법곳동)
	군포시	대야미동(대야미동)
		공도읍(만정리,신두리,용두리,진사리)
		금광면(개산리)
		미양면(고지리,구수리,보체리,정동리)
		보개면(동신리,불현리)
		삼죽면(내장리)
	안성시	서운면(신능리)
		양성면(삼암리)
		원곡면(반제리)
		일죽면(고은리금산리능국리방초리산북리신흥리월정리장암리죽림리화곡리)
		죽산면(매산리)
		중리동(중리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안양동)
		세종대왕면(광대리,용은리)
	여주시	연라동(연라동)
		흥천면(마래리,율극리)
		가장동(가장동)
	오산시	내삼미동(내삼미동)
		서동(서동)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왕곡동(왕곡동)
	의정부시	고산동(고산동)
		대월면(대대리,대흥리)
		마장면(오천리,이치리,작촌리,해월리)
	이천시	백사면(백우리)
	'- '	부발읍(고백리,대관리,아미리)
		율면(산성리)
		호법면(동산리,송갈리)
		고덕면(궁리,동고리)
		서탄면(마두리,사리,회화리)
	<del></del> =11 . 1	오성면(길음리,숙성리,신리,안화리,양교리,창내리)
	· 평택시	월곡동(월곡동)
		청북읍(고잔리,삼계리)
		_ 포승읍(석정리,홍원리)
		합정동(합정동)
		가산면(가산리,금현리,마산리,정교리)
		관인면(냉정리,탄동리)
		군내면(상성북리,하성북리)
		선단동(선단동)
	포천시	설운동(설운동)
		<u> 신북면(계류리,고일리,만세교리,삼성당리,심곡리)</u>
		영중면(거사리,금주리,성동리,양문리,영송리)
		일동면(길명리)
		· · · · · · · · · · · · · · · · · · ·
	화성시	남양읍(장덕리)
	1 -10.1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배양동(배양동)
		양감면(사창리,정문리)
		우정읍(멱우리,운평리,원안리,주곡리,화수리)
		장안면(금의리,독정리,석포리,장안리)
		정남면(괘랑리,금복리,문학리,발산리,음양리)
		팔탄면(해창리)
		향남읍(구문천리,길성리,상신리,수직리)
	양양군	소양면(송현리)
	영월군	주천면(금마리)
		지정면(신평리)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만종리,무장리)
0 ==		동송읍(대위리,상노리,양지리,오지리)
	철원군	철원읍(사요리,율이리)
	춘천시	신북읍(발산리,산천리,유포리,율문리)
	음성군	생극면(병암리,임곡리,팔성리)
		강제동(강제동)
		고명동(고명동)
		금성면(동막리,양화리)
	제천시	명지동(명지동)
	7411274	봉양읍(연박리,장평리)
		ㅎㅎᆸ(근¬¬¬,ㅎㅎ¬)   송학면(송한리)
		신월동(신월동)
		흑석동(흑석동)
		덕산읍(산수리,신척리,인산리,합목리,화상리)
	진천군	이월면(동성리,사곡리,삼용리,신월리,중산리)
충청북도		진천읍(상신리)
001-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비룡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성재리)
	OT TOLT	강내면(연정리)
		오송읍(동평리,오송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장남리)
		지동동(지동동)
		목행동(목행동)
		봉방동(봉방동)
	* -	산척면(영덕리)
	충주시	앙성면(강천리,단암리,중전리)
		엄정면(괴동리,신만리)
		중앙탑면(용전리,하구암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경천리,화헌리)
		우성면(목천리)
		의당면(요룡리)
	7,1,7	부리면(선원리)
	금산군	제원면(구억리)
	논산시	노성면(구암리,송당리,읍내리)
		상월면(대명리,대촌리,신충리,주곡리,한천리)
	당진시	석문면(초락도리)
	부여군	구룡면(구봉리)
	1 1 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규암면(노화리)
		남면(내곡리,송학리,회동리)
		옥산면(수암리)
		장암면(점상리)
		충화면(지석리)
		홍산면(교원리,무정리,북촌리,상천리,정동리,토정리,홍양리)
		고북면(사기리)
		부석면(가사리,갈마리,강당리,강수리,월계리,창리)
	서산시	성연면(갈현리)
	1101	음암면(신장리)
		인지면(풍전리,화수리)
		팔봉면(대황리)
	서천군	마서면(송내리,장선리)
		배미동(배미동)
	아산시	신창면(남성리,수장리)
	MILL	염치읍(방현리,중방리)
	예산군	합교읍(상하리,신가리) 문처용(용점과)
		목천읍(운전리)
		병천면(병천리,용두리) 불명(영추리 유지리)
	천안시 동남구	북면(연춘리,은지리) 성남면(대흥리,신사리,용원리,화성리)
	[전한시 등급표	중요한(대중의,한사의,중원의,외중의)   수신면(발산리,속창리,신풍리,장산리)
		_ ㅜ (
		- 년 8 8 (년 8 8 ) - 풍세면(가송리,남관리,보성리,삼태리,용정리,풍서리)
	4101.11.11.11.	성환읍(대홍리,도하리,복모리,성환리,신가리,안궁리,양령리,와룡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연곡리)
	태안군	태안읍(도내리)
		서부면(궁리)
	홍성군	홍북읍(갈산리,산수리,석택리)
	コおユ	부안면(선운리)
	고창군	아산면(구암리,반암리,학전리)
	군산시	성산면(성덕리)
	-	공덕면(공덕리,동계리,저산리,제말리,황산리,회룡리)
		금구면(금구리,낙성리,옥성리,용지리,하신리)
	김제시	만경읍(대동리,송상리,장산리)
		백구면(월봉리,학동리)
		부량면(대평리,용성리,월승리)
전라북도		용지면(반교리,봉의리,부교리,송산리,예촌리,용수리,장신리)
		청하면(관상리,대청리,동지산리,월현리,장산리)
		계화면(궁안리,양산리,의복리,창북리)
		동진면(동전리,안성리)
	부안군	백산면(금판리,대죽리,평교리,하청리) 부안읍(내요리,외하리)
		<u>구진읍(네뵤디,되아디)</u>   하서면(언독리)
		어지면(전국니)   행안면(대초리,삼간리)
	익산시	
		춘포면(인수리)
	정읍시	 감곡면(승방리)
		섬흑진(등등다)   이평면(장내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エ	시·正·丁	정우면(대사리,우일리)
	강진군	강진읍(춘전리)
	과나이티니	군동면(삼신리)
	광양시	태인동(태인동)
	구례군	구례읍(계산리,산성리,원방리)
		문 지면(고내기)
		토지면(금내리)
		공산면(가송리,금곡리,남창리,동촌리,중포리,화성리)
		금천면(석전리,신가리,오강리,원곡리,촌곡리)
		노안면(금동리,도산리,유곡리,장동리)
		동강면(곡천리,대전리,양지리,월양리,장동리,진천리)
		봉황면(덕림리,오림리,옥곡리)
	나주시	산포면(내기리,덕례리,등정리,매성리,송림리)
		석현동(석현동)
		세지면(교산리,내정리,동곡리,벽산리,성산리,송제리,오봉리,죽동리)
		송촌동(송촌동)
		영산동(영산동)
		왕곡면(신원리)
전라남도		청동(청동)
	담양군	대전면(대치리,중옥리)
	무안군	현경면(해운리)
		교량동(교량동)
	순천시	오천동(오천동)
		해룡면(대안리)
	여수시	주삼동(주삼동)
	<u> </u>	화양면(서촌리)
	영암군	삼호읍(난전리,동호리,용앙리)
		북일면(신흥리)
	장성군	장성읍(안평리)
		진원면(학림리)
		나산면(삼축리,용두리,월봉리,이문리,초포리)
		손불면(궁산리,석창리)
	함평군	월야면(양정리,영월리,용월리)
		함평읍(가동리,장교리,장년리)
		해보면(금덕리,문장리,해보리)
	±111 L ¬	산이면(진산리)
	해남군	황산면(송호리)
	경주시	강동면(오금리,호명리)
경상북도		안강읍(근계리,사방리,산대리,육통리)
		천북면(동산리,신당리,화산리)
경상남도		거창읍(가지리,동변리,장팔리,학리)
	71+17	남상면(대산리,무촌리,송변리,전척리)
	거창군	남하면(둔마리,무릉리)
		마리면(하고리)
	김해시	생림면(봉림리)
		진영읍(내룡리,본산리)
		한림면(시산리,장방리)
	 창녕군	· · · · ·
		대지면(효정리)
		대합면(소야리,퇴산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산면(신제리)
		이방면(석리,안리,초곡리)
	창원시 의창구	동읍(석산리)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 ③-3. 발생 우려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원두리)
		설성면(신필리)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난산리,신리,우포리,장동리,줄포리,파산리)